

#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규약

|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|
| 제정   | 2007. 3. 30. |
| 개정   | 2007. 8. 23. |
| 개정   | 2009. 1. 29. |
| 개정   | 2009. 8. 19. |
| 개정   | 2010. 1. 19. |
| 개정   | 2011. 1. 26. |
| 개정   | 2012. 5. 9.  |
| 개정   | 2014. 3. 12. |
| 개정   | 2014. 6. 25. |
| 개정   | 2015. 3. 25. |
| 전부개정 | 2018. 2. 20. |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 (설립근거 및 명칭)** 이 규약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 제6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(이하 “장애인체육회”라 하며, 외국에 대하여는 Seoul Sports Association for the Differently Abled ‘약칭 SSAD’라 한다.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목적)**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을 활성화하여 건강증진과 통합사회 가치를 실현하며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(이하 ‘가맹단체’라 한다.)를 관리·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의 체육·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 (소재지)** 장애인체육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4조 (사업)** 장애인체육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1.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
2.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와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관리·지원
3. 장애인생활체육 교실운영·대회 개최,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전개
4. 시·도 및 해외 도시간의 장애인체육교류
5. 지역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, 주관, 승인한 사업에 참가 및 주최, 주관, 후원, 지원 등

- 6.전국장애인체육대회(동·하계,학생) 참가선수단 훈련 및 참가
- 7.장애인체육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방 장애인체육의 육성 및 보급
- 8.특수학교·통합학급의 체육활동지원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과 통합체육수업 보급
- 9.장애인선수 및 지도자 육성
- 10.장애인체육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
- 11.장애인체육에 관한 홍보 및 각종 자료수집, 각종 간행물 발간
- 12.지역의 장애인 체육정책 실현 및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·자문
- 13.목적달성을 위한 수의사업 및 기타 필요한 사업

## 제2장 조 직

### 제5조 (조직) 장애인체육회는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한다.

- ①장애인체육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가맹단체로 승인한 가맹단체의 서울특별시 지부로 가맹단체를 조직한다.
- ②제1항에 따른 가맹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  - 1.'정가맹단체'란 가맹단체로서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에 동의하여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가 승인 의결한 단체를 말한다.
  - 2.'준가맹단체'란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의결로써 가맹을 승인한 단체로 가맹단체로서의 권리사항을 제한적으로 적용받는 단체를 말한다.
  - 3.'인정단체'란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의결로써 가맹을 승인한 단체로 해당단체의 대표성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뿐 권리와 의무사항을 적용 받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.
- ③장애인체육회는 서울특별시의 각 자치구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, 지부는 '자치구장애인체육회'라고 정한다.
- ④가맹단체와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설립요건 및 절차, 운영, 탈퇴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.

### 제6조 (권리와 의무) 가맹단체와 자치구장애인체육회는 다음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.

- ①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.
- ②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.

### 제7조 (가맹 및 탈퇴) ①가맹단체가 되려는 단체는 장애인체육회 가맹을 신청하여야 한다. ②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탈퇴는 가맹탈퇴서를 제출하여 탈퇴할 수 있고 차기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보고해야 한다.

- ③가맹단체가 제6조 제2항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2/3 이상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.

## 제3장 대의원총회

**제8조 (구성)** 대의원총회는 제5조 제2항의 각 정가맹단체 장으로 구성한다.

**제9조 (권한)** ①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
1.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
2. 임원의 선임(회장 제외) 및 해임에 관한 사항
3. 정가맹단체의 가입, 강등 및 제명에 관한 사항
4. 준가맹단체의 강등 및 제명에 관한 사항
5.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규약 및 제 규정이 대의원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사항
7. 기타 중요사항

② 대의원총회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전부 또는 일부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.

1. 임원 전부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각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을 의결할 수 있으며, 일부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 1년 이상 경과한 임원에 대해서만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.
2. 임원의 해임은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제의되고,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3. 제2항 제2호에 따라 임원의 해임이 의결되었을 때 당해임원은 즉시 해임된다.

**제10조 (소집)** ① 장애인체육회의 정기 대의원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.

② 임시 대의원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장애인체육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재적이사 과반수가 대의원총회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
3.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대의원총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
4. 제27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

③ 제2항에 따라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,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대의원이 소집할 수 있다.

④ 대의원총회 소집은 개최 7일 전에 안건, 일시,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집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**제11조 (의장)** ①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. 다만,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.

② 제10조 제3항에 따라 이사 또는 대의원이 소집한 대의원총회의 경우 회장은 의장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, 출석대의원의 의결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.

③ 제1항에 의한 의장은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, 제2항에 의한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**제12조(의결정족수 및 의사)** ① 이 규약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제8조 의한 해당단체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해당 대의원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

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장이 대의원총회 전에 장애인체육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.

④ 대의원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
**제13조(대의원총회 의결 제척사유)**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의장 또는 대의원 자신의 취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

2. 자신과 장애인체육회 사이의 금전 또는 재산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이해가 상충하는 사항

**제14조(대의원총회 운영규정)** 대의원총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제4장 이사회

**제15조(구성)** 장애인체육회 이사회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.

1. 장애인체육회 회장

2. 장애인체육회 부회장

3.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

4. 장애인체육회 이사

**제16조(권한)**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
2.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3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4.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

5.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- 6.사무처장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
- 7.이사 보선에 관한 사항
- 8.준가맹단체·인정단체의 가입승인 및 인정단체 제명에 관한 사항
- 9.자치구장애인체육회 가입승인에 관한 사항
- 10.대의원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11.대의원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
- 12.기타 중요사항

**제17조(소집)** ①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, 사무처장 순으로 의장이 된다.

②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- 1.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
- 2.제27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, 일시,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)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- ④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해 의결할 수 있다.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- ⑤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는 경우 재적이사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출석한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임시의장을 선출한다.

**제18조(의결정족수)**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

**제19조(긴급한 업무의 처리)** 회장은 제16조의 각 호의 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. 단, 차기 이사회에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.

**제20조(이사회 운영규정)**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## 제5장 임원

**제21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** 장애인체육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1.회장 : 1인
- 2.부회장 : 약간인

3.사무처장 : 1인

4.이사 : 20인 이상 35인 이내

5.감사 : 2인

**제22조(회장의 선출)** 서울특별시장은 당연직 회장이 된다.

**제23조(부회장의 선임)**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**제24조(사무처장의 선임)** 사무처장은 부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
**제25조(이사 및 감사 선임)** ①이사는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②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 담당 국장급 공무원,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담당 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.

③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.

1.이사 정수에 5인 이상은 제5조에 따른 가맹단체의 대표를 선임해야 한다. 단 유형별 체육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.

2.장애인선수 출신 3인, 자치구장애인체육회 부회장 3인을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.

3.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

④감사는 부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하되,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.

⑤대의원은 임원에 선임 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의 1/5을 초과할 수 없다.

⑥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으나,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⑦여성 임원이 재적임원수의 30%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26조(임원의 임기)** ①회장의 임기는 서울특별시장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부회장,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③감사의 임기는 2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에 한하여 자동 연임된다.

④자문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 운영규정에 따른다.

⑤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의 증원으로 추가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⑥제2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제한 기간 산정에 있어 사무처장, 이사,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.

⑦제2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중임 제한 기간에는 부회장 재임 기간도 포함된다.

⑧임원의 임기가 만료 후에도 후임자 취임하기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**제27조(임원의 직무)** ①회장은 장애인체육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며, 부회장 유고시 부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.

④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⑤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장애인체육회 재산을 감사하는 사항

2.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

3.제1호 및 제2호에 대해 회장,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

4.제1호 및 제2호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를 발견하여 이를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사항

5.제4호에 따라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

⑥임원이 장애인체육회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1.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

2.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

3.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

⑦임원이 장애인체육회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.

**제28조(임원의 결격사유)**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2.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정관에서 정한 체육관련 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3.제2호에서 정한 체육관련 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4.제2호에서 정한 체육관련 단체에서 폭력, 성폭력, 승부조작, 직권남용 등의 비위 또는 해태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

②회장의 친족(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
③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④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.

**제29조(임원의 사임 및 해임)** ①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부회장 및 사무처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. 이사, 감사가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제출 즉시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.

②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임서 제출과 관계없이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간주한다.

1.제28조에 해당할 경우

2.가맹단체 및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대표 또는 임원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한 경우

**제30조(임원의 보수)**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6장 각종 위원회

**제31조(설치)** ①장애인체육회의 사업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한다.

1.인사위원회

2.자문위원회

3.법제상별위원회

4.전문체육위원회

5.생활체육위원회

6.임원심의위원회

②기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## 제7장 가맹단체

**제32조(가맹단체 조직)** ①장애인체육회는 종목별 경기단체와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로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맹단체를 조직한다.

②장애인체육회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가맹단체를 구분 한다.

**제33조(강등 및 관리단체 지정)** ①전문체육위원회의 평가 결과 2회 이상 부진단체로 지정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 및 재적대의원 2/3 이상의 의결로 강등할 수 있다.

②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가 중대한 문제, 사고, 분쟁,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등 조직 운영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제2항의 관리단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것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통해 지정하고 운영한다.

**제34조(규정)** 가맹단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
## 제8장 자치구장애인체육회

**제35조(자치구장애인체육회 조직)** ①장애인체육회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애인체육회를 제5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장애인체육회로 조직 할 수 있다.

②자치구장애인체육회가 소재한 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당연직 회장이 된다.

③제2항외 부회장 및 당연직 이사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5장을 준용한다.

**제36조(가입 및 탈퇴)** ①자치구장애인체육회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자치구장애인체육회 가입은 이사회 의결로 승인한다.

③자치구장애인체육회가 탈퇴하기 위해서는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그 탈퇴 사실은 차기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9장 재산과 회계

**제37조(재산의 구분)** ①장애인체육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기본재산은 체육회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한다.

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**제38조(재산의 관리)** 다음 각호의 장애인체육회 재산을 양도·증여·교환·용도변경·담보제공하거나 장애인체육회의 재정 또는 업무에 부담을 주거나 장애인체육회의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토지 및 건물

2.그 밖에 이사회가 정하는 주요 재산

**제39조(재원)** 장애인체육회 재원은 다음과 같다.

1.국비(국고 및 국민체육진흥기금)

2.서울특별시 보조금 및 기금

3.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
4.기부금 및 찬조금

5.사업수입금

6.기타수입금

**제40조(잉여금의 처리)** 장애인체육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.

- 1.이월결손금의 보전
- 2.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
- 3.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

**제41조(회계연도)** 장애인체육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**제42조(사업계획, 예산, 결산의 승인)** ①장애인체육회는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장애인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43조(기금 및 적립금)** ①장애인체육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 또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.

② 제 1 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.

**제44조(회계감사 등)** ①장애인체육회의 회계감사는 연1회 실시한다.

**제45조(가맹단체, 자치구장애인체육회 감사 및 징계)** ①장애인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맹단체와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조직운영,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·감사 할 수 있다.

②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·감사한 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해태가 있는 임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의 징계요구에 따라야 한다.

③제2항에 따른 장애인체육회의 조사·감사 및 징계 요구는 법제상별위원회 규정에 따른다.

## 제10장 사무처

**제46조(사무처)** ①장애인체육회는 사무집행을 위한 사무처를 두며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.

②사무처장은 제2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장애인체육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처 직원으로 신규 채용할 수 없다.

④직원은 법령 및 인사규정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

⑤사무처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 단 회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.

**제47조(사무처 운영규정 등)** 사무처의 기구, 조직, 직제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48조(경영공시)**장애인체육회는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등을 공시한다.

## 제11장 보칙

**제49조(규약개정)** 장애인체육회의 규약변경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0조(규정의 해석 등)** ①체육회의 규약은 가맹단체 및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규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지며, 장애인체육회의 규약에 위반되는 가맹단체 및 자치구장애인체육회 규약은 효력이 없다.

②가맹단체 및 자치구장애인체육회의 규약 중 장애인체육회의 규약 및 제규정과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에 관하여는 장애인체육회의 해석에 따른다.

**제51조(제한사항)** 가맹단체 및 자치구장애인체육회가 제6조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, 회수,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.

## 부칙

**제 1 조(시행일)** 이 규약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